

수원고등법원 2022. 11. 24 선고 2021나2086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박경규

피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담당변호사 이지호

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광장 담당변호사 문동효, 추강철

변 론 종 결 2022. 8. 25.

판 결 선 고 2022. 11. 24.

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7. 22. 선고 2020가합410376 판결

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안성시 D 공장용지

13,483.2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 2019. 7. 30. 체결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

취소하고,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0. 2. 10. 접수 제6321호로

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[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]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제출된 증거와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.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(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 제외).

### 2. 결 론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김태호, 판사 장지용, 판사 이봉락